발 간 등 록 번 호
UPA-2023-011-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T 052-228-5300 F 052-228-5329
www.upa.or.kr

홈페이지 기업정보 서비스 컨테이너 항로

2023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ULSAN PORT

UP

2023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ULSAN PORT

UP

2023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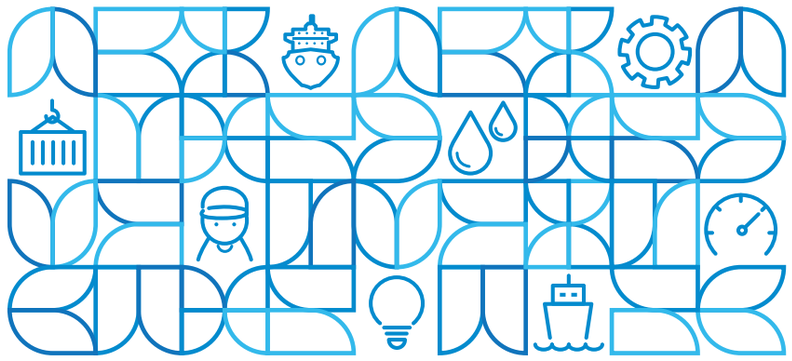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
ULSAN PORT AUTHORITY

CONTENTS

I. 2023년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07

- 2023년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개요 08
- 액체화물
  - 울산항 액체화물 신규화주 인센티브 10
  - 울산항 액체화물 방파제 환적(T/S) 인센티브 18
- 일반화물
  - 울산항 자동차화물 환적 인센티브 19
  - 울산항 자동차화물 항내운송 인센티브 20
  - 울산항 자동차선박 야간도선 인센티브 21
  - 울산항 자동차선박 특별도선 인센티브 22
- 컨테이너
  -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23
  - 컨테이너 대형선박 기항 인센티브 24
  - 컨테이너 임시기항(ad-hoc call) 인센티브 25
  -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 26
  -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선사) 27
  -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포워더) 28
  -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화주) 29
  -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달성 인센티브 30
  -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연안선 인센티브 31
  - 공 컨테이너/외항환적컨테이너 인센티브 32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통합법인 인센티브 33
  - 우수선화주기업(1·2등급) 인센티브 34
- 북방물류
  - 북극항로 수입화물 볼륨 인센티브 35
  - 북극항로 입출항선박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36
- 친환경항만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인센티브 37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 인센티브 38
  - 울산항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39
  - LNG 연료추진 외항화물선/내항선 인센티브 48
  -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실증 선박 인센티브 49
  -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인센티브 51
- 기타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센티브 53

II.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종류·요율 55

III. 2023년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전문) 61

I.

2023년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2023년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개요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수요 창출, 항만서비스 만족도 증대, 울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현황 요약표

6개 분야에서 총 30개 종류 인센티브 운영
2023년 예산 : 약 20.28억 원(현금지급·사용료환급)

구분		대상	유형 / 시기	2023년 예산
액체화물	소 계	2개		-
	액체화물 신규화주	화주	사용료감면형(즉시)	-
	액체화물 방파제 환적(T/S)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일반화물	소 계	4개		4억 원
	자동차화물 환적	선사	현금지급형('23.12)	4천만 원
	자동차화물 항내운송	선사	현금지급형('23.12)	3억 원
	자동차선박 야간도선	선사	현금지급형('23.12)	3천만 원
	자동차선박 특별도선	선사	현금지급형('23.12)	3천만 원
컨테이너	소 계	14개		11억 원
	신규항로 개설	선사	현금지급형('25.4)	2억 원
	대형선박 기항	선사	현금지급형('24.4)	1.6억 원
	임시기항(ad-hoc call)	선사	현금지급형('24.4)	1억 원
	환적 물동량 증가	선사	현금지급형('24.4)	2천만 원
	수출입 물동량 증가	선사	현금지급형('24.4)	3.5억 원
	수출입 물동량 증가	포워더	현금지급형('24.4)	1억 원
	수출입 물동량 증가	화주	현금지급형('24.4)	1.5억 원
	목표물동량 달성	터미널	현금지급형('24.4)	2천만 원
	컨테이너선박 - 외항선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컨테이너선박 - 연안선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컨테이너화물 - 공컨테이너	화주	사용료감면형(즉시)	-
	컨테이너화물 - 외항환적컨테이너	화주	사용료감면형(즉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통합법인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우수선화주기업(1·2등급)	선화주	사용료감면형(즉시)	-
북방물류	소 계	2개		1천만 원
	북극항로 통과 수입화주	화주	현금지급형('24.2월)	1천만 원
	북극항로 통과 선박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친환경 항만	소 계	7개		5.18억 원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선사	사용료감면형(환급/'24.上)	5억 원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시범운영)	선사 대리점	현금지급형('23.5월)	1.8천만원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지원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LNG 연료추진선 - 외항화물선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LNG 연료추진선 - 내항선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실증 선박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기 타	소 계	1개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사	사용료감면형(즉시)	-

※ 공통 원칙

- 연중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금액 범위, 지급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안내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용어 등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 인센티브 지급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센티브 수급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의 자산 형태는 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울산항 인센티브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류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 / 보류

-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하지 않은 자
-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 또는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또는 「미납채권관리지침」제10조에 해당하는 자
- 타 부서에서 지급 제외 또는 지급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로 지정된 자
- 파산 등으로 추후 울산항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인센티브 제도에서 규정한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환수

- 인센티브 지급 일련의 과정에서 수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인센티브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울산항 인센티브별 담당자 안내

부서명/업무명			담당자	TEL	E-MAIL
물류영업부	마케팅	액체화물	조유진 대리	052-228-5412	yjcho56@upa.or.kr
		일반화물, 북방물류	서지우 주임	052-228-5447	jiuseo@upa.or.kr
		컨테이너	배상희 과장	052-228-5418	shbae@upa.or.kr
	고객지원 (Port-MIS)	선박료·화물료 총괄	김재만 대리	052-228-5404	georgia@upa.or.kr
		화물료	오경은 주임	052-228-5401	dhruddms7@upa.or.kr
		외항선입출항료	김경영 주임	052-228-5402	girl1177@upa.or.kr
		내항선입출항료	배경리 주임	052-228-5403	bree@upa.or.kr
안전환경실		VSR	하정운 대리	052-228-5457	hjw018@upa.or.kr
물류전략실		친환경벙커링·LNG	이효빈 과장	052-228-5411	hblee0818@upa.or.kr
항만건설실		AMP	이인배 주임	052-228-5485	dldlsqoek@upa.or.kr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 조성 및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액체화물 취급화주 유치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화주
  - 울산항이 하역항으로 명기된 관련 증빙서류 상 수하인
  - 최초입항일 기준 과거 2년간 울산항을 통해 해당 화물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자
  - 신규화종 수입을 위해 울산항 내 상업용 탱크터미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급요건

- 대상화종 : 해양수산부 화물분류체계 기준 '액체화물'

품목	HS CODE	최저물량	하역방식	포장방식
원유(역청유), 석유	2709	5천M/T	송유관	벌크 (비컨)
석유정제품	2710,2712,2713	1만M/T	송유관	
석유가스류	2705,2711	5천M/T	송유관	
화학공업 생산품	28,29,30,32,33,34,35,36,37,38	5천M/T	송유관/기계/일반	
동식물성 유지류	15	5천M/T	송유관/기계/일반	

※ 최저물량 : Port-MIS에 신고한 신규 화종의 양하화물톤(항차당)기준으로, 필요 시 수입증빙서류와 상호검증 실시. 단위는 중량톤인 Metric Ton(유사단위or환산) 적용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감면항목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지급항목

- 지급항목 : 화물수입 시 화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구분	선박료(외항선限)			화물료 (화물입항료)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자사선·나용선	○	○	○	○
정기용선	○	○	○	○
항해용선	X	X	X	○

※ 단, 해당 선박 내 신규 화물과 기존 취급화물(또는 통과화물)이 혼재된 경우 선박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신규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료만 면제됨

- 지급기간 : 최초 입항일로부터 3년

제출서류

- 울산항 수입 증빙이 가능한 운송·상업서류 사본(수하인 명시)
  - 선하증권(B/L), Sea WayBill,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등
- 탱크터미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규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서류 사본
- 기타 공사에서 인센티브 제공 적격 여부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선박 입항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사용료 감면
화주	화주	UPA	UPA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시행기간

- 2023. 2. 23. ~ 2025. 12. 31. (3년)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1(화물료)

기타사항

- 화주 명의로 Port-MIS 화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증빙서류와 상호검증
- 인센티브 인정 대상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한국보팍터미날㈜, 현대오일터미널㈜,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태영인더스트리㈜, KPX글로벌㈜, 울산에너지터미널㈜, 온산탱크터미널㈜, KDTT㈜, 효성화학㈜
- 기존 수입화주의 경우, 과거 2년간 취급이력이 없는 신규 화종을 수입하기 위해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이용(신규, 추가 등)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혜 가능

신규화종 대상여부 판단기준

품목	원유,석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류	화학공업생산품	동식물성유지류
HS코드	4자리	4자리	6자리	6자리(예외有)	2자리

- 근거 및 FAQ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 인센티브 관련 FAQ 별지 참조

FAQ 울산항 액체화물 신규화주 인센티브

Q-1 '과거 2년간 울산항 이용 실적이 없는 화주'와 '신규 화종'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과거 2년'의 기준 시점은 해당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예정)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에서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계시스템(Port-MIS) '통합화물신고 정보'를 통해 과거 울산항 이용 여부를 조사하며, 인센티브 수혜를 희망하는 화주는 필요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하는 과거 2년 수입실적증명서(울산항限) 제출이 가능합니다.

A '신규 화주'의 경우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울산항 이용 이력이 전무한 신규 화주가 수입하는 경우
2) 기존 울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입한 화주가 과거 2년간 취급 이력이 없는 신규 화종을 수입하는 경우

이 중 2)에 해당하는 화주의 경우, 신규 화종 여부는 아래와 같이 품목별 HS 코드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품목	원유,석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류	화학공업생산품	동식물성유지류
HS코드	4자리	4자리	6자리	6자리	2자리

ex) 기존에 메탄올(2905.11)을 수입하던 화주가 에틸렌글리콜(2905.31)을 신규 수입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혜 가능(화학공업생산품 : 6자리 변경)

단, 화학공업생산품의 경우 종류가 수만 종에 달하므로 6자리가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분류체계에 따라 신규 화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필요시 10자리까지 확인한 뒤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 2931.00 ~ 2931.90의 경우, '그 밖의 유-무기화합물'로 신고됨에 따라 단일화종 간주 또는 세부화종(10단위) 확인 실시

Q-2 신규 액체화물의 수출과 환적을 제외하고 수입화물만 감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 인센티브 제도는 외국항만에서 울산항으로 액체화물 수입 후 상업용 탱크터미널에 보관·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동북아 환적 허브 지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 및 액체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울산항으로 수입된 이후 가공·블렌딩 후 재수출되었거나 환적 되는 경우에는 이력 관리 및 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에만 한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Q-3 해당 화주가 기존 취급화물과 신규 화물을 1척의 선박에 동시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울산항에 입항(예정)하는 선박 내 신규 화물과 기존 취급화물(또는 통과화물)이 혼재된 경우에는, 선박료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해당 신규화물에 해당하는 화물료만 감면됩니다.

본 인센티브는 '신규 수입하는 액체화물'에 한정하여 산출되는 선박료, 화물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상 선박료는 해당 선박의 총 톤수(Gross Tonnage)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와 같이 동일 선박 내 적재화물이 혼재된 경우에는 행정 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화물료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Q-4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항목 중 '선박료'의 경우, 용선계약에 따라 화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자사선의 경우 선박 등록증서상 소유주의 이름과 화주(선하증권상 명기된 화주명)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A 정기용선(Time Charter)할 경우 용선계약서상 아래 조항의 내용(예시)을 확인하게 됩니다.

<Shelltime 4(탱커선 주요 정기용선계약서 양식)> 중에서

Charterers to 7. (a) Charterers shall provide and pay for all fuel(except fuel used for domestic services), towage Provide and pilotage and shall pay agency fees, port charges, commissions, expenses of loading and unloading cargoe

☞ 항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항만시설사용료, 도선료, 예선료 등) 일체를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A 선박의 운항·항해 지시권을 가지지 않고 항해용선(Voyage Charter)을 통해 울산항으로 해상운송을 하게 될 경우 아래 조항의 내용(예시)을 확인하게 됩니다.

<Asbatankvoy(탱커선 주요 항해용선계약서 양식)> 중에서

12. DUES – TAXES – WHARFAGE. The Charterer shall pay all taxes, dues and other charges on the cargo. The Owner shall pay all dues and other charges on the Vessel (whether or not such dues or charges are assessed on the basis of quantity of carg)

☞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화물료)를 항해용선자가 부담하고,
선박에 대한 모든 비용(정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료)을 부담한다는 내용

Q-5 '최저물량 충족여부' 확인 기준과, 'M/T의 유사 단위 또는 환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통합화물신고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중량톤'을 기준으로 최저물량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선하증권(B/L)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증빙 서류와 상호검증을 실시합니다.

ex) * Port-MIS 확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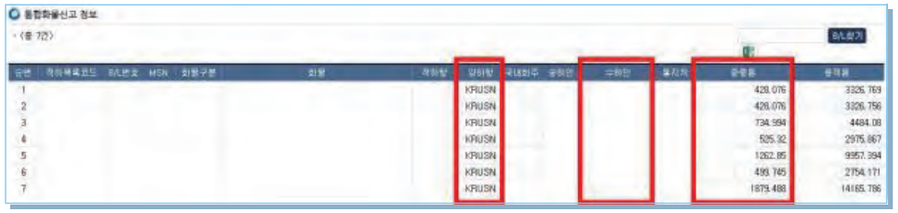

ex) * 선하증권(B/L) 확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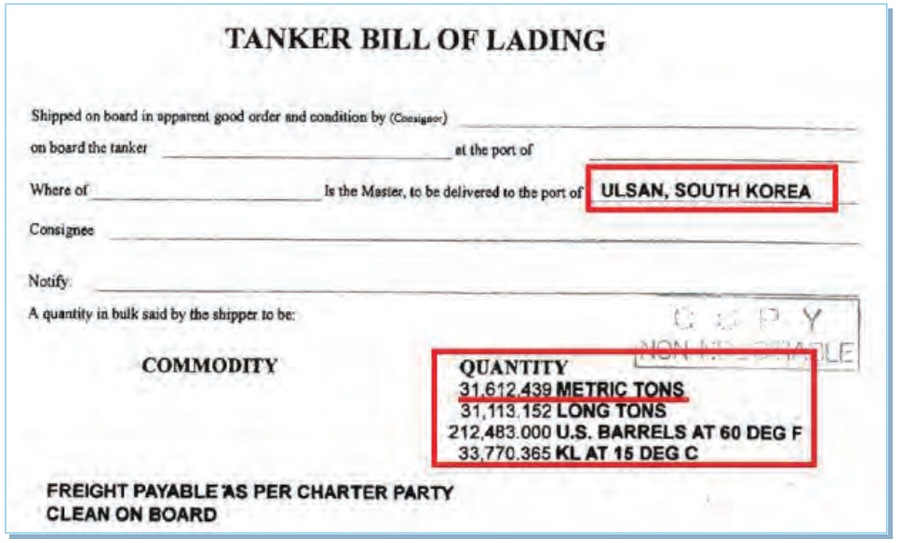

TANKER BILL OF LADING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 (Consignor) _____

on board the tanker _____ at the port of _____

Where of _____ Is the Master, to be delivered to the port of ULSAN, SOUTH KOREA

Consignee _____

Notify _____

A quantity in bulk said by the shipper to be:

COPY NON NEGOTIABLE

COMMODITY	QUANTITY
	31,612.439 METRIC TONS
	31,113.152 LONG TONS
	212,483.000 U.S. BARRELS AT 60 DEG F
	33,770.365 KL AT 15 DEG C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CLEAN ON BOARD

ex) * 수입신고필증 확인 예시

UNI-PASS 수입신고필증

A

Metric Ton이 아닌 유사 또는 환산이 필요한 단위를 사용하면서 위 증빙을 통해 중량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국제표준 또는 해상운송 시 일반적인 단위 환산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합니다.

단, 화물별로 부피·밀도·비중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환산 기준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필요시 화주는 수입 화물의 중량톤 환산 결과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등을 공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량톤

- 영국톤 1 Long Ton(L/T) = 2,240 LBS = 1,016.05kg
- 미국톤 1 Short Ton(S/T) = 2,000 LBS = 907.18kg
- 미터톤 1 Metric Ton(M/T) 또는 Kilo Ton = 2,204 LBS = 1,000kg

용적톤

- 1 CBM = 1㎥ = 약 0.883 Measurement Ton = 35.305CUFT
- 1 Measurement Ton = 40ft3 = 1.133㎥
- 1 US barrel = 41.976939 US gal = 158.9873 ℓ = 0.1589 CBM
- (유류) 1 US gal = 3.7854 ℓ

용적톤 ➡ **중량톤 환산(해상운송 시 중량-용적 분기점 계산기준)**

- 1 CBM = 1 Metric Ton

끝.

울산항 방파제 액체화물 환적(T/S) 인센티브

전 세계 최초 방파제 내 T/S부두 운영 활성화 및
울산항 이용 고객의 액체화물 환적 이용 지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 방파제 T/S부두에 접안하여 액체화물을 선박과 선박 간 이송하는 외항선 - 대상시설 : 남방파제 T/S부두(MBF-01~02), 북방파제T/S부두(MBF-03~04)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정박료, 접안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게 부과하는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 항만시설 사용목적이 '양하' 또는 '적하' 또는 '양적하'에 한정
제출서류	○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방파제 T/S부두 액체화물 환적 실시 (선사, 연중)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선사, 연중)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UPA, 연중)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UPA, 연중)
시행기간	○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울산항 자동차화물 환적 인센티브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를 통해 울산항 환적경쟁력 강화 및 신규 수요 창출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울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자동차 전용선사
지급요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화물을 타 항만에서 운송하여 울산항에서 환적하는 경우(양·적하 구분) - 자동차화물: HS CODE 870300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4천만 원
지급항목	○ 상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당 2,000원 지급
제출서류	○ 인센티브 신청서 ○ 선적결과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자동차 환적화물 양·적하 (선사, '22.11.~'23.10.) → ② 인센티브 신청 (선사, '23.11.) → ③ 지급요건 및 적격여부 검토 (UPA, '23.11.~'23.12.) → ④ 인센티브 지급 (UPA, ~'23.12.)
시행기간	○ 2022. 11. 1. ~ 2023. 10. 31. (1년)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47
기타사항	○ 당기 인센티브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시 인센티브 시행 기간 내 신청한 선사별 물동량 비율로 분배 지급 ○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Port-MIS를 통해 대조 및 검토 ○ 동일 화물에 대해 '울산항 자동차화물 항내운송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울산항 자동차화물 항내운송 인센티브

울산항 항내운송 화물 지원을 통한 타 항만 이탈방지 및 해상운송 물량 유치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울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자동차 전용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 항내(부두 간) 운송을 통해 자동차화물을 처리하는 경우(양·적하 구분) - 자동차화물: HS CODE 870300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3억 원
지급항목	○ 상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화물에 대당 1,500원 지급
제출서류	○ 인센티브 신청서 ○ 선적결과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자동차화물 양·적하 / 선사 / '22.11.~'23.10. → ② 인센티브 신청 / 선사 / '23.11. → ③ 지급요건 및 적격여부 검토 / UPA / '23.11.~'23.12. → ④ 인센티브 지급 / UPA / ~'23.12.
시행기간	○ 2022. 11. 1. ~ 2023. 10. 31. (1년)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47
기타사항	○ 당기 인센티브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시 인센티브 시행 기간 내 신청한 선사별 물동량 비율로 분배 지급 ○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Port-MIS를 통해 대조 및 검토 ○ 동일 화물에 대해 '울산항 자동차화물 항내운송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울산항 자동차선박 야간도선 인센티브

울산항 야간도선 규정 변경에 따른 선사 비용 증가 부담 완화 및 물류비 경쟁력 강화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울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자동차 전용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을 이용하는 자동차운반선이 울산항 항내(부두 간)운송을 위해 야간에 도선하여 야간 도선위험 할증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3천만 원
지급항목	○ 상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톤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6만 톤 미만) 척당 50만 원 - (6만 톤 이상) 척당 100만 원
제출서류	○ 인센티브 신청서 ○ 도선사 Invoice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자동차운반선 항내운송 / 선사 / '22.11.~'23.10. → ② 인센티브 신청 / 선사 / '23.11. → ③ 지급요건 및 적격여부 검토 / UPA / '23.11.~'23.12. → ④ 인센티브 지급 / UPA / ~'23.12.
시행기간	○ 2022. 11. 1. ~ 2023. 10. 31. (1년)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47
기타사항	○ 당기 인센티브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시 인센티브 시행 기간 내 신청한 선사별 선박 비율로 분배 지급 ○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Port-MIS를 통해 대조 및 검토 ○ 동일 선박에 대해 '울산항 자동차선박 특별도선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울산항 자동차선박 특별도선 인센티브

울산항 기상악화에 따른 도선 제한 문제 지원을 통한 울산항 입항 및 물동량 증가 기여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울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자동차 전용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을 이용하려는 자동차운반선이 기상악화로 인해 타항만 입항 후 울산항 도선사가 승선하여 울산항으로 입항한 경우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3천만 원
지급항목	○ 상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회당 500만 원 지급 – 선사별 연 최대 3회 지원
제출서류	○ 인센티브 신청서 ○ 타항만 승선허가서 ○ 통장사본 ○ 기상악화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선불가 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자동차운반선 입항	인센티브 신청	지급요건 및 적격여부 검토	인센티브 지급
선사	선사	UPA	UPA
‘22.11.~‘23.10.	‘23.11.	‘23.11.~‘23.12.	~‘23.12.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2022. 11. 1. ~ 2023. 10. 31. (1년)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47
기타사항	○ 당기 인센티브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시 인센티브 시행 기간 내 신청한 선사별 선박 비율로 분배 지급 ○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Port-MIS를 통해 대조 및 검토 ○ 동일 선박에 대해 ‘울산항 자동차선박 야간도선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울산항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 확대 및 울산권역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신규항로 개설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 울산항에 기항하는 선사로 울산항에 신규로 운항(공동운항 포함)하여 1년 이상 해당 항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선사
지급요건	○ 연간 30항차 이상 기항 – 2023.1.1.~2023.12.31. 이내 신규항로 개설일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 울산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신규항로 서비스에 한해 신규항로로 인정하되 항로 조정은 기존 국외기항지 중 50% 이상 변경 시 신규 항로로 간주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정액지급형 ○ 2023년 예산 : 2억 원
지급항목	○ 신규항로 개설 시 항로 당 1억 원 지급 – 공동운항 신규항로의 경우 선사별 운항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 분배 ○ 대상기간 내 항로개설 및 운항실적을 종합하여 차차년도에 인센티브 지급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1년 간 30항차 이상 신규항로 기항지별 선박 운항 증빙자료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신규항로 개설 및 운항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선사	UPA	선사	UPA
‘23.1.1.~‘23.12.31.	‘25.2.~3.	‘25.2.~3.	‘25.4.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대형선박 기항 인센티브

울산항 부두시설 규모 대비 대형 컨테이너 선박 입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총톤수 28,000톤 이상의 선박을 울산항에 투입하여 운항하는 선사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구간지급형 ○ 2023년 예산 : 1.6억 원
지급항목	○ 컨테이너 선박 규모별로 차등하여 인센티브 지급

규모(GT)	28,000~39,999	40,000~44,999	45,000~
항차당 금액	50만원	140만원	320만원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국제총톤수증서 및 입항실적 증빙서류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대형컨선 투입 및 운항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선사	UPA	선사	UPA
’23.1.1.~’23.12.31.	’24.2.~3.	’24.2.~3.	’24.4.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임시기항(Ad-hoc-call) 인센티브

공(空) 컨테이너 공급 확대 및 선복 확보를 위한 임시기항 선박 유치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에 임시기항한 부정기 컨테이너선 중 1회당 100TEU 이상 양적하한 선사(적·공 컨테이너 구분 없음, 환적 포함) 또는 울산지역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되어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울산항에 최초 기항한 선사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구간지급형 / 정액지급형 ○ 2023년 예산 : 1억 원 – 울산항 임시기항 선박 : 5천만 원 / 신조선 최초기항 선박 : 5천만 원
지급항목	○ 울산항 임시기항 선박 : 선박 1척당 1회에 한하여 실적 구간별 지급

물동량(TEU)	100~300	301~500	501~
금액	350만원	500만원	700만원

– 울산항 외 타 항로 서비스에 투입 중인 선박 반선 시 울산항에 최초 기항 및 적재화물을 전부 양하한 경우
– 기존 항로 서비스와 별개로 공 컨테이너 수급 및 화물 적체 해소 목적으로 임시기항하는 경우

○ 신조선 최초기항 선박 : 선박 1척당 7백만 원 정액 지급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증빙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데이터 기준 산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선박입항 및 임시기항 사유 등 증빙자료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임시 컨테이너 선박 투입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선사	UPA	선사	UPA
’23.1.1.~’23.12.31.	’24.2.~3.	’24.2.~3.	’24.4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

고부가가치 화물인 환적화물의 울산항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2023년 환적 컨테이너를 100TEU 이상 취급한 선사 중 전년대비 취급 실적이 증가한 선사 (적·공 컨테이너 구분 없음)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2천만 원
지급항목	○ 2023년 환적 물동량이 전년대비 증가 시 증가한 1TEU 당 10,000원 지급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환적 컨테이너 처리 실적 증빙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데이터 기준 산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환적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선사	UPA	선사	UPA
´23.1.1.~´23.12.31.	´24.2.~3.	´24.2.~3.	´24.4.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선사)

울산항 이용 컨테이너 선사 대상 물동량 증가 기여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2022년 이전부터 울산항에 기항하여 2023년 수출입 물동량을 3천TEU 이상 취급한 선사 (적·공 컨테이너 구분 없음, 환적물동량 제외)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구간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3.5억 원 – 수입 실적 인센티브 : 5천만 원 /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 : 3억 원
지급항목	○ 수입 실적 인센티브 – 2023년 수입물동량(수입환적 제외) 실적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 지급

수입실적 (TEU)	8,001 ~10,000	10,001 ~30,000	30,001 ~40,000	40,001 ~50,000	50,001 ~70,000	70,001~
지급액	3백만원	5백만원	8백만원	1.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 수출입 증가 인센티브
– 수출입 물동량(환적 제외)이 전년대비 증가 시 증가한 1TEU 당 10,000원 지급
* 전년도 실적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월평균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치 산출(기준치 = 해당 기간의 월평균 실적 × 12개월)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 실적 증빙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데이터 기준 산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선사	UPA	선사	UPA
´23.1.1.~´23.12.31.	´24.2.~3.	´24.2.~3.	´24.4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포워더)

울산항 이탈 화물 최소화 및 울산권역 수출입 활성화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지급요건	○ 2023년 울산항을 이용한 '적' 컨테이너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포워더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1억 원
지급항목	○ 울산항 이용 포워더 중 2023년 울산항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컨테이너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 시 증가한 1톤당 600원 지급 * 톤 미만 실적은 지급 제외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울산항 '적' 컨테이너 수출 또는 수입 증빙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한 2022년, 2023년 울산항 수출 또는 수입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수출입화물 울산항 포워딩 (포워더, '23.1.1.~'23.12.31.) → ②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UPA, '24.2.~3.) → ③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포워더, '24.2.~3.) → ④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UPA, '24.4.)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화주)

화주 우위 틈새시장 마케팅 강화 및 울산권역 수출입 활성화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화주
지급요건	○ 2023년 울산항을 이용한 '적' 컨테이너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화주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1.5억 원
지급항목	○ 울산항 이용 화주 중 2023년 울산항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컨테이너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 시 증가한 1톤당 600원 지급 * 톤 미만 실적은 지급 제외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울산항 '적' 컨테이너 수출 또는 수입 증빙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한 2022년, 2023년 울산항 수출 또는 수입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울산항 이용 화물 수출입 (화주, '23.1.1.~'23.12.31.) → ②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UPA, '24.2.~3.) → ③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포워더, '24.2.~3.) → ④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UPA, '24.4.)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달성 인센티브

울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울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지급요건	○ 2023년 울산항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달성 시 지급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정액지급형 ○ 2023년 예산 : 2천만 원
지급항목	○ 2023년 울산항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달성 시 각 운영사별로 처리한 물동량 기여비율로 배분하여 지급 ○ 2023년 울산항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 431,000TEU – 과거 실적 및 향후 전망 고려 울산항만공사 자체 수립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UPA 제공 양식) ○ 터미널 운영사별 컨테이너 처리 실적 증빙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데이터 기준 산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울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화물 유치 (터미널 운영사, ´23.1.1.~´23.12.31.) → ②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UPA, ´24.2.~3.) → ③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포워더, ´24.2.~3.) → ④ 인센티브 적용 적격여부 검토 및 지급 (UPA, ´24.4.)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UPA에서 인센티브 정책 철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기타사항	○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금액 범위를 초과할 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별 기여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 인센티브 예산액 × 업체별 기여도(%) = 최종 지급금액 * 업체별 기여도(%) = (업체별 지급액/인센티브 총 지급액) × 100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or 연안선 인센티브

컨테이너 선박 울산항 입항 유인을 통한 울산항 선복 확보 및 물동량 유치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연안선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컨테이너 외항선/연안선 별 지급항목

구분	지급항목					감면율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항로표지료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	–	–	○	○	50%
연안 컨테이너전용선	–	○	○	○ (수출입限)	–	100%

* 매 입출항 시마다 20TEU 이상을 수송해야 함

○ 대상선종(코드) : (풀)컨테이너선(41),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제출서류	○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연안선 입항 (선사, ´23.1.1.~´23.12.31.)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선사, ´23.1.1.~´23.12.31.)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UPA, ´23.1.1.~´23.12.31.)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UPA, ´23.1.1.~´23.12.31.)
시행기간	○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3(내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공 컨테이너 or 외항환적 컨테이너 인센티브

울산항 공컨테이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환적화물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화주
지급요건	○ 울산항에서 공 컨테이너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외항 컨테이너를 환적하는 경우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감면항목 : 화물료
지급항목	○ 울산항을 통해 취급되는 공컨테이너(환적×), 외항 환적 컨테이너(수출입×)에 부과하는 화물료 100% 감면
제출서류	○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공 컨테이너 / 외항환적 컨테이너 처리 – 선화주 – 연중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 선화주 – 연중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 UPA – 연중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 UPA – 연중
시행기간	○ (공컨테이너)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 (외항환적 컨테이너)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1(화물료)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통합법인 인센티브

국내 선사 인트라아시아 해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통합법인 인센티브 운영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울산항 기항 시 부과되는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제출서류	○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통합법인 운용 컨외항선 입항 – 선사 – 연중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 선사 – 연중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 UPA – 연중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 UPA – 연중
시행기간	○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우수선화주기업(1·2등급) 인센티브

인증 기업 지원을 통한 선화주 기업 성장 지원 및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화주
지급요건	○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우수선화주 기업이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화주) 수출입기업, 국제물류주선업 - (선사) 「해운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우수 선화주기업 등급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차등 - (1등급) 50% / (2등급) 30% - (감면조건)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유효기간에 한정 ○ 대상선종(코드) : (풀)컨테이너선(41),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제출서류	○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선화주 인증서 - UPA에서 해양수산부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확인 결과 인증 유효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 불필요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우수선화주기업 운용 컨외항선 입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8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북극항로 수입화물 볼륨 인센티브

울산항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 자원 수입기반 조성을 위한 수입화주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화주 - 북극항로(NSR:North Sea Route)를 통과하여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하는 화주
지급요건	**액체화물 (원유, 가스 등)** ○ 30만톤이상 : 각 5천만원 ○ 22만톤이상~30만톤미만 : 각 4천만원 ○ 15만톤이상~22만톤미만 : 각 3천만원 ○ 7만톤이상~15만톤미만 : 각 2천만원 ○ 7만톤 미만 : 각 1천만원 **벌크화물** *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 ○ 20만톤 이상 : 각 5천만원 ○ 10만톤이상~20만톤미만 : 각 4천만원 ○ 5만톤이상~10만톤미만 : 각 3천만원 ○ 3만톤이상~5만톤미만 : 각 2천만원 ○ 3만톤미만 : 각 1천만원 **컨테이너 화물** ○ TEU 당 1만원(20ft 기준 * 벌크선으로 수송 시 TEU / Ton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10'는 요율의 0.5배 / 40' 이상은 요율의 2배 적용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구간지급형 / 단위지급형 ○ 2023년 예산 : 1천만 원
지급항목	○ 연도별(1.1 ~ 12.31) 화물 수입실적을 종합하여 차년도 초(~2월) 인센티브 지급 - 연간 총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 범위 초과 시 화주별 물동량 비율로 분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제출서류	○ 러시아 북극해항로국(NSRA) 발행 북극항로 통과허가서(NSR Permission) ○ 선하증권(B/L) 사본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북극항로 통과선박 입항 및 화물 양하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인센티브 지급
화주	화주	UPA	UPA
´23.1.1.~´23.12.31.	´23.12.~´24.1.	´24.1.	´24.1.~2.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2015. 7. 1. ~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 (실적 산정기간) 2023. 1. 1. ~ 2023. 12. 31.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5447

북극항로 입출항선박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울산항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물류 활성화 기반 조성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북극항로(NSR)를 통과(예정)하여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사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화물료, 정박료, 접안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북극항로를 통과(예정)하여 울산항 입출항 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제출서류	○ 러시아 북극해항로국(NSRA) 발행 북극항로 통과허가서(NSR Permission) ○ 북극항로 운항 선사(선박) 및 화주(화물) 정보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북극항로 통과(예정)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인센티브 제도) 2014. 1. 1. ~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5447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1(화물료), 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국내 타 항만을 경유하여 북극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 항만별 중복 감면 가능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인센티브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에 입항한 G/T 3천 톤 이상 외항선 중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대상 선종(6종)의 선박으로서, Port-MIS에 저속운항 참여를 신청하고 울산항 저속운항해역에서 선종별 권고 속도 준수 등의 저속운항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준수한 선박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환급형 – 감면항목 :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 제외) ○ 2023년 예산 : 5억 원
지급항목	○ 기 납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환급

선종(Port-MIS Code)	권고속도	선박입출항료 감면율
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27)	12knot	30% [계절관리제(1~3월, 12월) 40%]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원유운반선(51), 석유제품운반선(52), 케미칼운반선(53)	10knot	15% [계절관리제(1~3월, 12월) 25%]

– 타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先 선박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先 감면액을 제외한 선박입출항료(실제 최종 납부한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용
– 선종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되, 연간 인센티브 한도(5억 원)를 초과할 경우 모든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에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간 최대 5억 원까지만 인센티브 지급
ex) 연간 인센티브 10억 발생 ⇒ 지급률 50% 적용 ⇒ 연간 총 5억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 (저속운항 참여 신청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인센티브 지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선사 위임장(대리점 신청시)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저속운항해역에서 실제 저속 입항 후 저속운항 참여 신청(포트미스)	인센티브 금액 산정 및 검증	인센티브 지급 신청 (포트미스)	인센티브 지급
선사	UPA·선사	선사	UPA
´23.1.1.~´23.12.31.	´24.1.~2.	´24.2.~3.	´24.上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2019. 12. 1. ~ 2023. 12. 31.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052-228-5457
기타사항	○ 관련 규정(시행 근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해수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수부)」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UPA)」 및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UPA)」 ○ 인센티브 금액 산정 시 십 원 단위 미만 절사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활성화 인센티브

울산항 입항 선박의 VSR 참여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강화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대리점
지급요건	○ 울산항 VSR 대상 액체화물선(3천 톤 이상 외항선 중 원유·석유제품·케미칼운반선)의 저속운항선박 지원 신청(포트미스) 업무를 대행한 선사대리점 - 단, 포트미스 저속운항 지원 신청 내역의 대리점 항목에 해당 선사대리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 저속운항선박 지원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 선박이 저속운항을 준수했음을 확정(포트미스)받아야 함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현금지급형 – 단위지급형 ○ 시범운영 기간 예산 한도 : 1,800만 원
지급항목	○ 선사대리점에서 VSR 참여 신청 업무를 대행한 원유운반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칼운반선이 저속운항을 준수했음을 확정받을 시, 해당 저속운항(업무 대행) 1건당 3만 원 지급 - 단, 인센티브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률을 적용하여 모든 선사대리점에 정률 인하하여 인센티브 예산 한도까지만 지급 - 인센티브 금액 산정 시 십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저속운항 준수 판정은 포트미스 저속운항 검증 및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해수부)」에 따름

대상선종(Port-MIS Code)	준수 속도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10knot

※ 본 선사대리점 대상 "VSR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에는 울산항 VSR 대상 선종 중 컨테이너선(41), 자동차운반선(27),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은 해당되지 않음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업무 대행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인센티브 지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등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업무 대행(포트미스)	저속운항 신청내역, 준수여부 확인 및 인센티브 금액 산정	인센티브 금액 확인 및 신청	인센티브 지급
선사대리점	UPA	선사대리점	UPA
'23.1.~3.	'23.4.~5.	'23.5.	'23.5.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시범운영) 2023. 1. 1. ~ 2023. 3. 31.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052-228-5457
기타사항	○ 관련 규정(시행 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해수부)」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UPA)」 및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UPA)」

울산항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울산항 벙커링 산업 활성화 및 선박배출가스 대기환경 오염 축소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에 화물 하역(양·적하)을 목적으로 입항하여 급유를 위해 항만시설을 추가로 사용하고, 저유황연료(황 함유량 0.5% 미만)를 급유한 외항 화물선사 - 저유황연료 범위 : MGO(Marine Gas Oil), Gas Oil, LSMGO(Low Sulfur MGO), LSFO(Low Sulfur Fuel Oil), MDO(Marine Diesel Oil), DSL(Diesel), LNG 등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감면항목 : 접안료 또는 정박료
지급항목	○ 지급요건 충족 시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제출서류	○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UPA 제공양식)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 세관 발행 ○ Bunker Delivery Receipt : 공급업체 및 본선확인必 ○ 화물 양·적하 작업일지(Time Sheet) : 본선확인必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선박 입항 및 하역·급유 실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구분	세부사항
시행기간	○ 2020. 1. 1. ~ 2023. 12. 31.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052-228-5411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항계 밖 작업 등으로 항차분리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도 적용 가능 ○ 하나의 시설에서 화물 하역과 급유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액체화물 수송선에 한하여 제도 적용 가능 - (하역 전 급유 시) 접안 시각 ~ 배관 연결 시각까지 - (하역 후 급유 시) 배관 분리 시각 ~ 이안 시각까지 ○ 신조선이 외항 화물 하역 후 급유 시 제도 적용 가능 ○ 인센티브 이용을 위한 FAQ 자료 : 별지

FAQ 울산항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1 인센티브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Q-1 본 제도는 선박이 하역작업 전.후 급유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이 화물 하역 및 급유 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건 1	외항선 자격으로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하역 전 또는 후 급유를 위해 항만시설을 추가로 사용
조건 2	저유황연료(황 함유량 0.5% 미만) 급유 시 * MGO(Marine Gas Oil), Gas Oil, ,LSMGO (Low Sulfur MGO), LSFO(Low Sulfur Fuel Oil), MDO(Marine Diesel Oil), DSL(Diesel), LNG 등

Q-2 선종별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종은 액체화물 수송선(탱커선)과 이외 화물 수송 선박으로 구분하며, 선종의 범위(기준)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액체화물 수송선(탱커선)	이외 화물수송선
범위* (기준)	원유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케미칼가스 운반선, LPG·LNG 운반선, 기타 유조선	일반화물선, 산물선(벌크선), 자동차운반선, 풀컨테이너선, 세미(혼재)컨테이너선, 석탄운반선, 양곡운반선, 원목운반선, 광석운반선, 시멘트운반선, 핫코일운반선, 철강재운반선, 코일전용선, 모래운반선, 냉동·냉장선
사유	항만 내에서 하역(양·적하)과 급유가 동시에 **불가능한** 선박	항만 내에서 하역(양·적하)과 급유가 동시에 **가능한** 선박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분류 기준으로서, 위의 명시된 선종 외에는 감면 불가

Q-3 본 제도에서 말하는 "급유"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윤활유, 유압유를 넣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A 본 제도에서 언급한 "급유"는 다음과 같은 연료를 지칭합니다.

① Fuel Oil (Bunker A,B,C)
② MGO (Marine Gas Oil)
③ MDO (Marine Diesel Oil)
④ LNG (Liquefied Natural Gas)

따라서 위의 4가지 종류 외에 윤활유(LO, Lubricating Oil), 유압유(HO, Hydraulic Operating Fluid)를 넣는 작업만으로는 본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본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A 제도 수혜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기 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② 선용품 반입(적재) 확인 및 허가(신청)서(세관 발행)
③ 급유증빙서류(Bunker Delivery Receipt) – 공급업체 및 본선 확인 필수
④ 화물 양·적하 작업일지(Time Sheet) – 본선 확인 필수(스탬프 및 선장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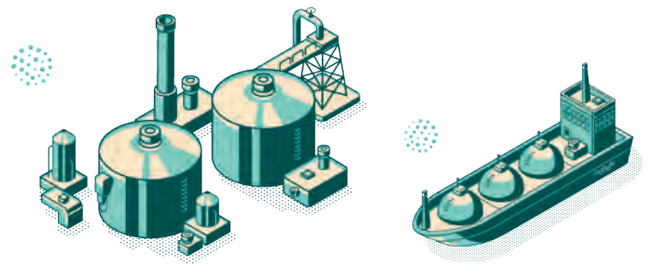

2 급유 사례별 안내

2-1 항만시설 이용·급유시간 계산 관련

Q-5 선박이 특정 부두에서 하역 작업 전.후 다른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같은 부두에서 급유 작업을 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고 감면 대상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하역 전.후 같은 부두에서 그대로 급유를 실시한다면 **액체화물 수송선 이외 선박은 감면이 불가능**하며, 액체화물 수송선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만시설사용료가 최대 12시간까지 감면됩니다.

하역 전 급유	하역부두 접안시간부터 급유 후 양적하가 시작되는* 시점(최대 12시간) * 선박과 동 부두의 액체화물 하역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이 연결되는 시점
하역 후 급유	화물 하역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급유가 종료되는* 시점(최대 12시간) * 선박과 동 부두의 액체화물 하역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이 분리되는 시점

* 실제 하역 및 급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시간 계산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경우 공사(052-228-5425, 5402)로 문의 요망

Q-6 하역 전 또는 후 복수의 시설을 이용하여 2회 이상의 급유를 실시했을 경우, 시설 사용시간을 총 합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하역 작업 전 또는 후 급유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 **1회에 한하여 최초 12시간까지만 적용**되므로, 복수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CASE 1 하역 작업 후 복수의 시설에서 급유작업을 한 경우

① 하역 작업 ➡ ② 정박지 A 이용 급유 ➡ ③ 접안시설 B 이용 급유

CASE 2 하역 전 급유를 실시하고 하역 후에도 급유를 실시한 경우

① 정박지 A 이용 급유 ➡ ② 하역 작업 ➡ ③ 접안시설 B 이용 급유

☞ 정박지 A와 접안시설 B 중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만 최초 12시간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제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선사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청

Q-7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최대 12시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항만시설을 13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12시간을 면제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나요?

A 동 지원제도를 적용하면 항만시설을 13시간 사용한 경우 급유 소요 시간만큼만 면제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 기본료가 아닌 초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① 급유를 위해 **정박지(E-1)을 13시간** 사용 후
② 화물 양·적하를 위해 **민유부두(SK 4부두)를 15시간** 사용

해석

E-1 정박료에 대해 급유 지원 제도를 적용하면 12시간을 면제하고 남은 1시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SK 4부두 시설(민유부두는 UPA에서 정박료 징수) 사용시간에 합산(15+1시간=16시간)하여 초과 사용료로 정산함 **[16시간 = 12시간(정박료 기본료) + 4시간(초과 사용료)]**

Q-8 외항 화물선이 울산항에서 화물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접안·정박시설에서 급유만 실시한 뒤 출항할 경우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울산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울산항에 급유만을 목적으로 입항한 통과선박(외항선)일 경우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상 아래 조항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6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생략)

Q-9 UPA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이 아닌 곳에서 급유를 할 경우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울산항 접안시설 중 UPA의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닌 민자시설(부두)의 경우, 아래 'CASE 2'에 해당될 경우에만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CASE 1 민자시설(부두)에서 하역과 급유를 모두 실시한 경우

① 민자시설(부두) A 하역 작업 ➡ ② 민자시설(부두) A 이용 급유

☞ '화물 하역 전 또는 후 급유'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민자시설(부두)의 경우 UPA의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②에 대한 사용료 면제 불가

CASE 2 민자시설(부두)에서 하역 전 또는 후, UPA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에서 급유를 실시한 경우

① 정박지 A 이용 급유 ➡ ② 민자시설(부두) 하역 작업

① 민자시설(부두) 하역 작업 ➡ ② 정박지 A 이용 급유

☞ '화물 하역 전 또는 후 급유'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급유를 실시한 시설이 UPA 징수대상 시설이므로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2019.10월 기준 민자시설(부두) 현황

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주
본항·미포항	MQP-01	미포부두-01	현대중공업
	MQP-02	미포부두-02	현대중공업
온산항·신항	MBO-05	정일컨부두	JUCT
	MBO-06	효성부두	효성
	MBC-01	신항컨부두-01	UNCT
	MBC-02	신항컨부두-02	UNCT
	MBC-03	신항컨부두-03	UNCT
	MBC-04	신항컨부두-04	UNCT
	MBN-11	세방신항부두	세방
	MBN-17	대한통운신항부두	대한통운

2-2 선박의 자격 관련

Q-10 외항선이 일시적으로 내항선 자격을 취득하여 연안화물 하역 작업을 한 뒤, 외항선 자격으로서 정박·접안시설에서 급유를 했다면(혹은 이와 반대 경우라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에서 규정하는 '하역'과 '급유'는 **일관되게 외항선의 자격으로서 이뤄지는 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항선 자격으로 하역 작업 후 외항선 자격으로 급유를 실시했다면(혹은 이와 반대 경우) 제도에서 규정한 일관된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운법」 및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적용

Q-11 원 자격 내항운송사업자가 일시적 외항운송사업자격을 허가 받아 외항화물을 하역한 뒤, 급유 목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외항자격 소멸(원자격 전환) 후 내항화물을 선적하여 출항했을 경우도 본 지원 제도가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역작업부터 급유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외항선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하역 후 급유 중 원 자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별로 일시적 자격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가 유효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 1 본 제도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① 원 자격 내항운송사업자 일시적 외항운송사업 허가 획득
② **외항화물 울산항에서 양하(외항선자격)**
③ **급유 작업(최초 12시간 중 원 자격 전환/내항선자격)**
④ 내항선화물선적 후 출항(내항선 자격)

CASE 2 본 제도가 유효한 경우

① 원 자격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울산항 입항 및 내항화물 양하(내항선자격)
② 일시적 외항운송사업허가 획득
③ **외항화물 적하(외항선자격)**
④ **급유작업(외항선자격) 후 출항**

Q-12 울산항에서 건조된 신조선 선박이 최초 출항 전 울산항 부두에서 화물 하역 작업 전·후 정박·접안시설에서 급유를 했다면 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에 따라, 출항을 하지 않은 선박은 외항선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제도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항에서 건조된 신조선이 접안·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할 경우(급유목적 이용 포함)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상 다른 조항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급유작업 취소·지연·중단 관련

Q-13 동일한 접안시설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중단하고 급유를 실시한 뒤, 다시 하역 작업을 실시한다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울산항 내에서 '액체화물 수송선'의 경우 하역과 급유 작업이 동시에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본선 확인된 화물 양·적하 작업일지(Time Sheet)/급유증빙서류(Bunker Delivery Receipt)/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 급유시간(면제시간)을 산정합니다.

액체화물 수송선 이외 선박의 경우 하역과 급유작업이 동일한 시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Q-14 본선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급유 중단 후 재급유 시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명령, 급유공급선박의 고장 등 본선의 귀책 외의 사유로 급유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급유를 실시할 경우, **'급유 중단 – 재급유' 작업이 연속으로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급유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12시간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선의 귀책으로 인하여 급유가 중단·지연될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감면되며, 급유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요건 미달로 인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CASE 1 급유 중단 및 피항 후, 재 입항하여 바로 급유를 실시한 경우

① 정박지 A 급유 중 중단 ➡ ② 피항 ➡ ③ 재입항 ➡ ④ 정박지 또는 접안시설 B 재급유

☞ 본선 귀책 외의 사유로 급유 중단, 피항 후 재입항하여 바로 재급유를 실시하였을 경우, ①, ② 소요시간 합산 최대 12시간까지 면제 가능

CASE 2 급유 중단 및 피항 후, 재 입항하여 하역 작업 후 급유를 실시한 경우

① 정박지 A 급유 중 중단 ➡ ② 피항 ➡ ③ 재입항 ➡ ④ 접안시설 B 하역 ➡ ⑤ 접안시설 B 급유

☞ 본선 귀책 외의 사유로 급유 중단, 피항 후 재입항하여 바로 급유를 하지 않고 중간 작업 후 급유를 실시하였을 경우, ① 또는 ⑤ 면제 택 1

Q-8 탱크클리닝 작업을 위하여 급유·하역 작업의 항차분리가 발생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나요?

A 탱크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항차가 분리되었으나, 두 항차에 걸쳐 급유 및 하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Q-16 본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혹은 실수로)으로 제도 적용을 신청하지 않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했는데, 향후 수정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받거나 본 지원 제도를 적용한 시설사용료로 재 납부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인력·자원 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월 세입을 마감하는 익월 5일까지 수정 신청을 할 때만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

LNG연료추진선 인센티브

울산항 내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및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전통 선박 연료 대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연료 추진 선박 대상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 또는 내항선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감면항목 : 접안료, 정박료
지급항목	○ 외항화물선/내항선 여부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차등 – (외항화물선) 20% / (내항선) 100% * 외항화물선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제출서류	○ 선박등록증서, LNG연료추진 엔진 탑재 증빙서류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LNG연료추진선 입항 (선사, '23.1.1.~'23.12.31.)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선사, '23.1.1.~'23.12.31.)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UPA, '23.1.1.~'23.12.31.)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UPA, '23.1.1.~'23.12.31.)
시행기간	○ (외항화물선)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 외항화물선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 (내항선)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1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3(내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실증 선박 인센티브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 활성화 및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항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실시하는 항만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부두운영사 등 항만 이용자
지급요건	○ 울산항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벙커링)에 대한 실증을 실시하는 사업자 및 실증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 (2) 울산항 관리기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반 허가·승인 등을 득한 경우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 '항만시설 사용목적' 코드가 급유(06)에 해당 ※ '친환경 선박연료' 기준 – (근거) 「친환경선박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 (범위) LNG, C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지급항목	○ 실증기간 동안 발생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실증을 실시한 항차에 한함)

기준	사용료	감면율	한도
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로표지사용료	50%	항차 당 5천만원
실증사업장 제공 부두운영사	항만시설전용사용료	20%	실증 1회 당 최대 1억원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 공모사업 선정 및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수행실적 관련 제반 증빙서류 – 본선작업일지(Time Sheet), 친환경 선박연료 해당여부 증빙서류 등 ○ 기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 불필요(증빙서류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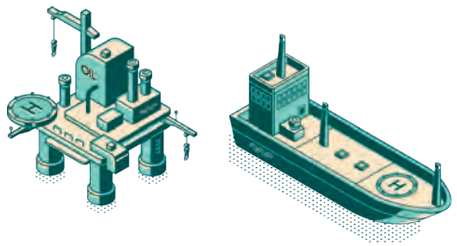

절 차

①	②	③	④
실증 선박 입출항 및 실증 실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항만이용자	항만이용자	UPA	UPA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시행기간

- 해양수산부,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연구사업)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5774
- (인센티브 제도)
  - LNG·수소·암모니아 :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052-228-5411
  - 메탄올 :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5418
- (항만시설사용료)
  - 선박료 :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3(내항선입출항)
  - 항만시설전용사용료 :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2-228-5445(부지, 수역), 5442(야적장, 건물)

기타사항

- 근거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2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 참고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38호(2023.1.27.) '2023년도 LNG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인센티브

울산항 친환경 탄소중립 항만 조성 및 울산항 이용 고객의 AMP 이용 활성화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에 기항하여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이용하는 외항선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 사용료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지급요건을 충족한 외항선이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 대해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15% 감면
제출서류	○ AMP 사용계획(설비 사용 전) : [별지] 사용계획서(양식) 참고 * 설비 사용 3일 전까지 인센티브 담당자에게 제출 ○ 사용 전력량 증빙 서류(설비 사용 후)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②	③	④
AMP 사용계획 제출 및 AMP 이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선사	선사	UPA	UPA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23.1.1.~'23.12.31.

시행기간

-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85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 AMP 사용계획서 양식 : 별지 3 참조

양식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사용계획서

I 기초정보

- **선 사 명 :**
- **선 박 명 :**
- **입출항 계획 :** (입항) 2023.00.00. 00:00 ~ (출항) 2023.00.00. 00:00
- **마지막 AMP 사용일 :**

II 사용계획

- **사용설비 :** 울산항 00부두 00선석
- **설비사용 :** 2023.00.00. 00:00 ~ 00:00 총 00시간
- **세부사용계획(예시)**

구분	시간	비고
선상회의	09:00 ~ 10:00	
설비점검	10:00 ~ 10:30	
전력공급	10:30 ~ 17:30	
연결해제 및 정리	17:00 ~ 18:00	

III 요청사항

- **(예시) 방선희망자 신청서 접수 등**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85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센티브

선박관리 기업 역량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 지원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인센티브 유 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지급요건을 충족한 선박에게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0% 감면
제출서류	○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받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 UPA에서 해양수산부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확인 결과 인증 유효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 불필요 ○ 기타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우수선박관리사업자 대상선박 입항 (선사, '23.1.1.~'23.12.31.)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선사, '23.1.1.~'23.12.31.)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UPA, '23.1.1.~'23.12.31.)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UPA, '23.1.1.~'23.12.31.)
시행기간	○ 2023. 12. 31. 까지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II.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종류·요율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종류·요율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및 별표 1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됨 (선박 1톤당 24원)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나) 그 밖의 선박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이하) : 3,691원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이하) : 6,78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이하) : 3,913원 ④ 삭제<2008.12.31>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그 밖의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 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4)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 (10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8.5원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 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 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1)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2) 화물체화료		원/ 10톤 · 1일	

구분			요금
일반화물	외항	입항	194
		출항	120
	내항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120
		내항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2,742
		내항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내항	75
무연탄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요금 면제 기간	입항 : 4일 출항 : 6일	4일	입항 : 4일 출항 : 6일	4일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경과기간	야적장		창고	
	외항	내항	외항	내항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 이상	292	210	339	236

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보관 · 처리시설	원/1㎡, 1월	1)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구분			요금
창고(상옥)		외항화물	1,029
		내항화물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420
		내항화물	307
	미포장	외항화물	277
		내항화물	203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2) 건물 · 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 · 처리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 사용중인 경우 : 「 항만법 시행령 」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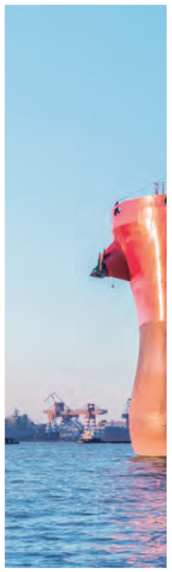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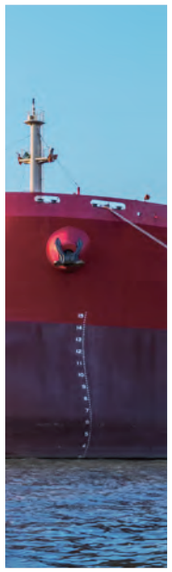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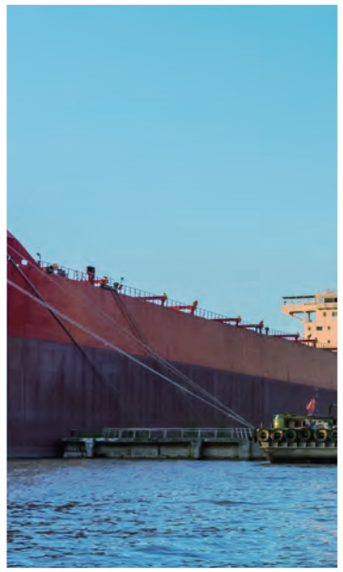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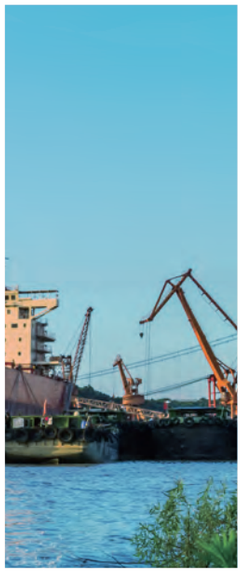

III.

2023년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전문)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전문)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2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화물 양하(揚荷: 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 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단,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감면) (2)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 액체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선 (항로표지사용료 제외)
	50%	(4)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 (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7)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 (8)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9)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30%	(10)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입항한 3천톤 이상의 컨테이너전용외항선과 공사가 지정한 선박(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선박저속 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와 공사에서 수립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세부 운영방안을 따르되,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40%를 적용한다.) (11)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2)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13)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15%	(14)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입항한 3천톤 이상의 공사가 지정한 선박(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와 공사에서 수립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세부 운영방안을 따르되,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25%를 적용한다.) (15)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선박 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도선제한(야간도선 제한으로 정박시 울산항 첫 도선시간인 06시15분 도선신청 선박에 한함)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공사가 지정한 선박 (3)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선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 액체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선 (5) 울산항에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화물 작업 전후 급유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외항선(황 함유량 0.5% 미만 연료유/최초 12시간까지) (6)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70%	(7)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50%	(8) 방파제의 환적부두에 접안하여 액체화물을 선박과 선박간 이송하는 선박 (9)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10)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 (11)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12)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0%	(13)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4)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15)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16)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0%	(17)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 사업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18)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19)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입출항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 톤수 300톤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 저장탱크를 이용, 보관하였다가 환적·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나. 접안료 및 정박료		(3) 본선트림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2023년 12월 31일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5)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6)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로 수입되는 액체화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화물 (7)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8)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9)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0)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제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50%	(2) LNG,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지원하는 항만(실증 1회당 최대 1억원)
	10%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한다)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5) 2023년 12월 31일까지 검수사업 등(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및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에 한함)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선사에게 하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역업체(최대 3억원, 단, 한정하역업(액체) 및 자체 화물만을 처리하는 하역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으로 한다)

MEMO.

MEMO.

2023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

2023년 4월 24일 인쇄
2023년 4월 24일 발행

발 행 인 김 재 균
발 행 처 울산항만공사
주 소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전 화 052-228-5300
팩 스 052-228-5329
홈페이지 www.upa.or.kr

발간등록번호 UPA-2023-011-01

책임편집 조 유 진
제 작 사 에스이메이커스(주)

* 본 자료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공사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